

[별표 6]

보조금 정산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산정 방식
정산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정산금액 = 보조금액 × 투자금액달성률 * 투자금액 달성률 = $\frac{\text{실제투자금액}}{\text{투자계획금액}}$ - ‘투자계획금액’ 은 보조금 신청 시 신규투자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 ※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※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, 건설투자비용,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※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(셋째자리 이하 반올림)까지 계산 ※ 제12조제2항,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원비율 가산을 받은 기업이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가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0원 처리. 다만, 정산 전에 지급된 금액이 총 보조금 결정액에서 가산분을 제외한 금액보다 클 경우, 그 차액을 환수 ☞ 보조금액 일부 환수 ※ 보조금 신청 시 반영되지 않은 기존 사업장의 축소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금액을 보조금 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하여 정산한다.(단,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지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한 면적만큼의 토지매입비 · 건물연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한 면적만큼의 건설투자비(단, 유희면적 내 투자의 경우 감소한 면적에 설치되는 기계장비구입비용)
타당성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산시 투자금액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☞ 보조금액 전액 환수 *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* 재평가항목 : 신규투자금액, 투자기간, 가점요소
정산잔액	정산잔액 = 보조금액 - 정산금액

추가투자 정산금 지원기준(제18조의2 관련)

구 분	산정 방식
초과투자 정산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조금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, 계획한 투자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완료한 경우, 정산검증 결과를 증빙자료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투자 정산금 신청 * 별표2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기준에 따라 구입한 기계장비 구입비용에 대해 보조금 신청시의 지원비율과 국비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초과투자 정산금 지원 * 초과투자 정산금은 최초 보조금 신청시 결정된 교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으며,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